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0. 3. 1]

제정일	2001. 5. 1
개정일	2023. 2. 1
개정차수	7차
담당부서	학생생활상담센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성희롱·성폭력상담소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남녀차별금지기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④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⑤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⑥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⑦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 등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의 당사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 4조 (전담부서) 남녀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학사운영과 : 교원, 조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서비스과 :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지원과 : 직원(일용직 포함)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 4조의 2 (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

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제 5조 (예방교육) ① 대학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2.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② 예방교육의 방법·내용 등의 관련사항은 각 전담부서의 협력 하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6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등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가해자도 사건조사 중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업무·공간분리, 휴가, 전보, 교육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 7조 (성희롱·성폭력상담소) ①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인권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소장 및 상담위원 1명 이상을 둔다. (개정 2023. 2. 1)

② 소장은 인권센터장이 겸직하며, 상담위원(남, 여 각 1명)은 소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2. 1)

③ 상담소장은 본교 내의 상담·고충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문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상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활동
3. 가해자 사전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에 상세조사 요청
4. 기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제 8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9조 (신고인과 신고인의 보호)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제6조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담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가급적 남녀동수로 구성하며 불가피하게 동수 구성

을 못 할 경우에는 양성 중 어느 하나의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또한, 학생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대표를 포함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를 돕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조사와 상담) ① 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조사의 방법) ①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성희롱·성폭력의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상담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 간 해결) ①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상담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담소장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심의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

우 모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징계) ①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이 입증될 경우 교직원은 본교 징계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며, 학생은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서비스과에서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 요구 시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담소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제기)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징계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의 50%를 교체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피 해 사 실	최초발생일		장소	
	최근발생일		장소	
	피해유형 (중복가능)	언어적 괴롭힘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접촉 <input type="checkbox"/> 학업·업무상의 차별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발생횟수	일회성 <input type="checkbox"/> 반복성 <input type="checkbox"/> (회)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행동 (중복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input type="checkbox"/>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input type="checkbox"/>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자의 행동의 변화/반응	중지 <input type="checkbox"/> 감소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증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피해 내용 (6하 원칙)				

방문 경위	자진 <input type="checkbox"/> 교수권유 <input type="checkbox"/> 직원권유 <input type="checkbox"/> 친구권유 <input type="checkbox"/> 학내광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실명 공개 여부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사건 해결 방향	비공식 절차(중재) <input type="checkbox"/> 공식 절차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요구사항 (중복가능)	사과 및 중재 <input type="checkbox"/> 공개사과 <input type="checkbox"/> 규정에 따른 처벌 <input type="checkbox"/> 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 (서 명)

동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